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7**가지 건의

1. [혁신] **전문직역 AI 진흥**으로, AI 변호사 · AI홈닥터 합법화
2. [실용] **근로시간 유연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상생] **상생금융 3종 패키지**로 복합금융위기 대응 강화
4. [상생] **한국형 디스커버리 · ADR 연계**로 신속한 중소기업분쟁 해결
5. [혁신] **대기업 CVC 활성화**로,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구축
6. [실용]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7. [혁신]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으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 1 전문직역 AI 진흥으로, AI 변호사 · AI 홀닥터 합법화

### □ 현황

- AI 산업 규모는 최근 3~4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 ‘법률 AI’ 산업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817억 달러로 전망
- 합법과 불법 사이 (GREY ZONE)에서 헤매는 국내 법률AI 산업
  -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해 ‘법률 AI’ 활성화 기반 조성이 지연
- 시범사업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비대면원격진료 (의료AI 산업)
  - 코로나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한시규정으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종료이후 보건의료법 시범사업으로 겨우 불안정한 명맥만 유지

### □ 정책 또는 공약

- (리걸테크 합법화) 입법을 통해 리걸테크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여지 제거, 변호사협회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 융합인재양성 등으로 직역갈등 해소
- (의료 AI·비대면원격진료 합법화) 의료법·디지털헬스케어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의료 AI·원격의료 분야 법률근거 확보 및 투자 불확실성 제거

### □ 기대 효과

- ‘변호사법’, ‘의료법’ 등 전문직역 관련 법률의 규제를 명확히 하여 AI 벤처기업 사업영역의 불확실성 해소(‘타다사태’ 방지)
- 법률·의료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AI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국가인재 편중현상 해소

### □ 실천방안

-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및 ‘변호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벤처기업계와 의료·법률 관련 전문가 단체의 상호소통을 통해 의제\* 논의

\* 거버넌스 구축, AI 기반 서비스의 합법성 보장, 융합인재 양성 방안 등

## 참고 1

## 리걸테크 진흥법(권철승 의원안)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b>‘리걸테크서비스’의 정의</b>      |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p> <p>나. 자동화된 법률 자문</p> <p>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p> <p>라.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p> <p>마.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p> <p>바.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p>                                      |
| <b>다른 법률과의 관계</b>         |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리걸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리걸테크서비스 사업자의 자격 및 제공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b>업무의 위탁</b>             | <p>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법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li> <li>2. 제7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li> <li>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
| <b>리걸테크사업자에 대한 허가제</b>    | <p>제10조(허가)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li> <li>2.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li> <li>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b>일반인 대상 리걸테크 서비스 범위</b> | <p>제15조(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① 법률분야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는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

## 2 근로시간 유연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현황

-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
-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고소득·연구직은 경직된 근로시간 적용이 자율성을 제약
  - 이는 현행 1개월의 정산기간(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으로는 3개월이 초과하는 중대형 프로젝트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움
  - IT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요구

※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고용형태 다양화 해외사례 :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美), 고도프로페셔널(日), 관리직원(獨) 등

### □ 정책 또는 공약

- 연구직 또는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 대상 근로시간 유연화
  - 연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연속휴식, 1일·1주 근로 상한 설정)
  -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

### □ 기대 효과

- 열정과 유연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문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실천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

## 참고 2

## 미국 · 일본의 고임금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도입 현황

| 국가 | 내용                                                                                                                                                                                                                                                                                                                                              |
|----|-------------------------------------------------------------------------------------------------------------------------------------------------------------------------------------------------------------------------------------------------------------------------------------------------------------------------------------------------|
| 미국 | <p>▶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White-collar Exemption)</p> <p>[적용 대상자]</p> <p>· 업무 요건 :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 근로자</p> <p>[적용제외 규정]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p> <p>※ 공정근로기준법(FLSA) 제13조 (a)항 제1호 및 노동부장관 규칙</p> <p>[임금 요건] 주급 \$684, 연급 \$107,432 이상</p> <p>* 다만,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관리직.전문직.행정직의 경우 완화 된 기준으로 업무 요건 충족 여부 판단</p>                                |
| 일본 | <p>▶ 고도프로페셔널 제도</p> <p>- 2014.12월 출범한 3차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 보고 노동시장 첫 번째 개혁과제로 도입 추진 중</p> <p>- 2016년 봄 시행을 목표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개혁안(초과근로수당 지급 배제)을 마련해 4주 4일, 연간 104일 이상 휴일을 부여하는 조건 하에서 근로시간 한도 시간외근로수당의 규정 적용을 제외함(2015.1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2018년 국회를 통과함(2019.4월 시행됨))</p> <p>[임금요건] 연봉 1075만엔 (1억원)</p> |
| 독일 | <p>사업조직법상의 ‘관리직원’의 개념 그대로 근로시간법제에 원용해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대상이다.</p> <p>※ 관리직원 요건 ① 피고용근로자 채용 및 해고권한 ② 포괄대리권 및 업무대리권 ③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p> <p>[임금요건] (관리직원의 연간수입 기준)</p> <p>연봉제+사회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의 3배 (2019년, 구서독 112,140유로, 구동독 103,320유로)</p>                                                                                                 |

### 3 상생금융 3종 패키지

#### □ 현황

- (고금리) 고금리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부족\*
  - \* 은행권 상생대책 이용한다는 중소기업 12.3%에 불과(중앙회 조사, '24.3월)
- (팩토링 예산 부족)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한도 조기 소진 등 정책적 효과가 미흡

#### <매출채권 팩토링 운영현황 >

(단위 : 억 원)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신용보증기금     | 596   | 900   | 1,500 | 2,000 |
| 기술보증기금     | 182   | 800   | 1,000 | 1,0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75   | 675   | 675   | 590   |
| 총 계        | 1,153 | 2,375 | 3,175 | 3,590 |

- (상생결제 한계)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품인 상생결제는 1,000조원 이상이 운용(2023년 12월)되고 있으나 2차 협력사로 확산이 미흡

#### □ 정책 또는 공약

- (상생금융지수 도입)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노력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수를 금융위 정책에 반영
  - \* 2010년 도입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로 확장
- (팩토링 확대)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 증액(1 조원) 및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 (상생결제 2차 확산) 2차 협력사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시스템 등 재설계
  - \* 관급공사의 상생결제가 2차로 확산될 수 있도록 E-호조 시스템 개편 추진 병행

#### □ 기대효과

-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납품대금 미수금을 인한 연쇄 도산 방지

#### □ 실천방안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해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률 개정
- 상생협력기금 활용한 팩토링 예산 증액

## 4 한국형 디스커버리·ADR\* 연계로 신속한 중소기업분쟁 해결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같은 분쟁해결 방식

### □ 현황

- (제도) 기술침해,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피해자가 입증)의 경우, 가해 기업이 증거를 숨기면서 피해기업의 패소가 빈번

\* 가해자도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에 가서 원정 소송하는 경우도 있음

- (조직) 대·중소기업간 기술침해, 불공정거래, 사업조정 등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조정·조사 제도들\*이 있으나, 통일적 운영에 한계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상생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기술침해/불공정거래 행정조사 등

### □ 정책 또는 공약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정부 행정조사 시 증거수집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침해 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도입

\* 중소기업 기술침해·불공정거래 분야 조정제도나 소송절차에 행정조사 결과를 제공

- (ADR 연계) 대·중기 분쟁조정과 조사를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및 강화하고, 각 행정조사와 조정의 연계절차 마련

\* (공동구성) 검찰청 검사, 법원 판사, 공정위 조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파견

### □ 기대 효과

- 기술침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정부가 행정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특허침해 소송제도를 구축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갖춘 조사·조정제도를 제공하고 법원 소송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 저감

### □ 실천방안

- 정부 內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조사·조정 전담 조직 강화

-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참고 4

## 디스커버리 (증거수집제도) 개요

### □ 디스커버리(Discovery) 개념

- (정의) 사전적으로 ‘발견’을 의미하나, 법률용어로는 증거의 공표(公表,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기)를 의미
- (개념) 미국제도로 법조계는 증거개시(증거를 열어서 보임)로 부름
  - 미국 민사소송에서 본안재판 前에 소송 관련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에게 요구해서 획득하는 절차(38sus 연방민사소송법)
- (절차) 소송 제기 → 디스커버리\* → 본안소송 → 판결 → 항소
  - \* 질문서, 자료요구, 진술녹취, 자백요구, 신체·정신감정 등 5가지 수단 이용
- (제재효) 증거 인멸·수정·은닉 시 패소 + 막대한 배상금 부과\*
  - \* 듀폰 vs. 코오롱 간 민사소송에서 코오롱의 고의적인 증거인멸 등 이유로 1조원의 손해배상 판결(11.9)

### □ 디스커버리 제도 장·단점

- (장점) ①쟁점 명확화, ②신속재판, ③합의 유도로 분쟁 조기해결
- (단점) ①증거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비용 소요, ②기업활동 위축

### □ 주요국 증거수집제도 동향

- (美·英) 분쟁 발생 예측 가능시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하며, 소제기 전·후 당사자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 증거확보제도

| 구분    | 미국(Discovery)                                                               | 영국(Disclosure)                                                           |
|-------|-----------------------------------------------------------------------------|--------------------------------------------------------------------------|
| 개요    | · 당사자의 청구 또는 항변에 관계된 범위 내에서 <u>당사자간 증거교환</u><br>· 분쟁 예상 시 <u>증거보전 의무</u> 발생 | · 법원 명령으로 문서목록 교환 및 열람 (소제기 前 가능 개시범위는 美 대비 제한적)<br>· 분쟁 예상 시 증거보전 의무 발생 |
| 법령    | ·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 · 민사소송규칙(CPR)                                                            |
| 시기    | · 제소 후 변론전 회합 시부터 시작                                                        | · 제소 후 3~4개월 후에 시작                                                       |
| 비밀 보호 | · 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u>상대방 대리인에만 열람 허용</u>                                   | · 대리인으로 열람범위 한정 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계약(합의나 명령)                                   |
| 불이행   | · 법정모욕죄 적용, 관련주장 각하, 증거 사용금지 등 제재조치 가능                                      |                                                                          |
| 비용    | · 약 5억~50억원(50만~500만달러)                                                     | · 약 3억~15억원(25만~100만파운드)                                                 |

- (獨·日) 당사자 신청으로 전문가의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이 신청인에 증거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중심 증거조사제도

| 구분    | 독일(Inspection)                                                                                                                                                                                                              | 일본(사증, 査証)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 등에서 증거조사 후 보고서 제출</li> <li>· 법원은 제출된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입증의 이익(원고)과 비밀보호의 이익(피고)을 비교형량</li> </ul> </li> </ul> |                                                                                           |
| 법령    | · 특허법                                                                                                                                                                                                                       | · 특허법                                                                                     |
| 시기    | · 특허침해 소제기 전후 신청                                                                                                                                                                                                            | · 특허침해 소송제기 후 신청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신청</li> <li>· 피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 의견청취, 전문가 기피신청, 조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li> </ul> |
| 비밀 보호 | · 신청인 대리인만 조사현장 입회, 조사 보고서 초안 열람 신청 가능                                                                                                                                                                                      |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의 대리인에 보고서 개시 가능                                                      |
| 불이행   | ·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수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 ·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의 증명사실을 진실로 인정                                                         |
| 비용    | · 약 6천만~3억원(5만~25만유로)                                                                                                                                                                                                       | · 최근 시행('20.10월)되어 사례 없음                                                                  |

##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필요성 (특허청 입장)

- (그간의 노력) 침해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 명령(§13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126의2)' 등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에 관한 증거 미제출시 강력한 제재효(특허권자가 입증을 희망하는 사실의 진실의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특허법 상 증거수집제도

#### □ 자료제출명령 제도(제132조) 개선 ('16.3.29.)

- (의의) 특허권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불응시 제재효)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 사항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제126조의2) 신설 ('19.1.8.)

- (의의)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함(입증책임의 전환)
- (불응시 제재효)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시한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 (한계점) 피고가 침해에 관한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이를 인멸·훼손·허위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내재
  - 특히, B2B(기업간 거래) 제품, 소프트웨어,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침해자가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침해입증 곤란\*

\* 특허침해소송의 원고승소율은 약 21.5%로서, 일반 민사소송의 1/3 수준

## 5 대기업 CVC 활성화로,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구축

### □ 현황

- 국내 CVC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 수준이 낮음
  - 일반주지회사 CVC의 경우 외부자금 출자 한도(40%)와 해외기업 투자 제한(20%) 등 규제가 엄격해 벤처투자 시장의 확장에 제약 발생

< '23년 발표된 CVC 관련 통계 비교 >

| 발표 주체                 | 공정위                 | 중기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
| CVC 범주                | 최협의<br>(일반지주회사 CVC) | 협의                      | 광의 + 최광의 일부           |
| CVC 숫자<br>(집계 기준 시점)  | 10개사<br>(‘22년 말)    | 86개사 내외<br>(‘23년 상반기 말) | 176개사<br>(‘23년 상반기 말) |
| ‘22년 CVC 벤처투자 실적      | 0.2조원               | 2.7조원                   | 4.5조원                 |
| ‘22년 전체 벤처투자<br>대비 비중 | <b>1.7%</b>         | <b>22%</b>              | <b>31%*</b>           |

-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국내 CVC의 벤처투자 규모는 전체 벤처투자의 19%에 불과하며, 미국(49.5%)과 일본(4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국내 CVC는 별도 규제가 없는 외국에 비해,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가 적용
  - 100% 지분보유 자회사, 부채비율 제한, 펀드에 외부자금 조달 제한, 해외투자 제한 등

### □ 정책 또는 공약

- 일반지주회사 CVC에 적용된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기업이 벤처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CVC에 엑셀레이터 업무 영역 허용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M&A와 연계성 강화

### □ 기대 효과

-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 실천방안

- 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펀드별 외부자금 출자비중 펀드별 40%→ 펀드 전체 합산액의 40%
  - 해외투자 제한 20% → 50%

## 참고 5-1

## CVC의 정의 및 범주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 기업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립하거나 보유하는 벤처캐피탈

- 중소벤처기업부의 CVC 범주 구분 기준

< CVC 범주별 대기업 CVC 예시 >

| 최협의               | 협의                                           | 광의                    | 최광의                |
|-------------------|----------------------------------------------|-----------------------|--------------------|
| GS벤처스<br>CJ인베스트먼트 | 삼성벤처투자<br>롯데벤처스<br>시그나이트파트너스 신세계<br>에코프로파트너스 |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중앙<br>농심캐피탈 | 현대자동차 제로원<br>하나벤처스 |

- **(최협의)**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보유 벤처캐피탈
  - 현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CVC인지 여부가 투자 특성 보다는 기업집단의 지주체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비합리적
  - \* (예시) 삼성벤처투자는 CVC로서 활동하나, 삼성이 지주체제가 아니어서 최협의 미해당
- **(협의)** 비금융 기업집단이 경영지배(지분 30% 이상 최대주주)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전략적 목적의 투자, 협업, M&A 등을 수행
  - CVC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반면, 전략적 목적의 투자 등 행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광의)** 비금융 기업집단이 경영지배하는 벤처캐피탈
  - '23. 상반기 말 기준 벤처투자회사 95개사(전체의 40%), 신기사 61개사(전체의 58%)가 해당하여 CVC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과다
  - \* 신기사 설립 시 자본금 100억원 이상 필요 → 신기사는 기업이 설립하는 경우가 다수
- **(최광의)** 광의의 CVC에 금융 기업집단 소속 VC, VC 라이선스가 없는 투자법인, 기업 내 벤처투자 수행 부서 등을 포함

## 참고 5-2

## 일반지주회사 CVC 현황

□ (일반 현황) '23년 말 기준 12개사 (벤처투자회사 4개사, 신기사 8개사)

- 대기업집단\* 소속 7개사, 중견기업 소속 5개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 ~ 10조원)

| 기업집단<br>규모   | 소속<br>기업집단 | CVC명     | VC 구분 | 기업집단<br>규모    | 소속<br>기업집단 | CVC명      | VC 구분 |
|--------------|------------|----------|-------|---------------|------------|-----------|-------|
| 대기업<br>(8개사) | CJ         | CJ인베스트먼트 | 벤처사   | 중견기업<br>(5개사) | 대웅         | 대웅인베스트먼트  | 벤처사   |
|              | 포스코        | 포스코기술투자  | 신기사   |               | 빗썸         | BTC인베스트먼트 |       |
|              | GS         | GS벤처스    |       |               | 평화산업       | 예원파트너스    |       |
|              | 효성         | 효성벤처스    |       |               | F&F        | F&F파트너스   |       |
|              | LX         | LX벤처스    |       |               | 한일VC       | 신기사       |       |
|              | 세아         | 세아기술투자   |       |               |            |           |       |
|              | 동원         | 동원기술투자   |       |               |            |           |       |
|              | 두산         | 두산인베스트먼트 |       |               |            |           |       |

□ (규제)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 시 외부자금 모집, 해외투자, 지분구조, 차입 등에 대해 일반 VC보다 강한 규제 도입

- 일반지주회사 CVC에는 「공정거래법」 상 규제와 「벤처투자법」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신기사)이 동시에 적용

| 구 분               | 일반지주회사 CVC 대상 규제                                         | 일반 VC와 비교                    |          |
|-------------------|----------------------------------------------------------|------------------------------|----------|
|                   |                                                          | 벤처투자회사                       | 신기사      |
| 외부자금 모집           | ▶ 각 펀드마다 40% 이내                                          |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해외투자              | ▶ CVC 총자산의 20% 이하                                        | ▶ 총자산의 60% 이하                | ▶ 제한 없음  |
| 지분구조              | ▶ 지주회사가 100% 보유                                          |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 투자목적회사<br>설립      | ▶ 불가능                                                    | ▶ 가능                         | ▶ 가능     |
| 투자금지 대상           | ▶ 계열회사<br>▶ 대기업집단*<br>* 상호출자제한 + 공시대상<br>▶ 총수 일가가 출자한 기업 | ▶ 계열회사<br>▶ 상호출자제한<br>기업집단   | ▶ 국내 대기업 |
| 피투자기업<br>지분 양도·매각 | ▶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 밖에<br>소유한 계열회사에 투자지분<br>양도·매각 금지           | ▶ 계열회사에 투자<br>지분 양도·매각<br>금지 | ▶ 제한 없음  |

## 6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 □ 현황

- 경계선 지능인(IQ 71~84)은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소외대상으로서, 전체 인구의 13.6%인 약 700여만명으로 추정(“이슈와논점” 제2109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 가운데 청년(20~34세)은 131만명으로 추정(23. 12. 기준)하며,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워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방안 필요
- 경계선 지능인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다수의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령기에는 집단따돌림, 성인기에는 범죄 노출 등 사회적 문제, 청년기에는 잦은 취업 실패로 인한 구직 포기 등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요인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자원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달성

### □ 정책 또는 공약

- 경계선 지능인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한 전국 단위 취업망 구축
  - 취업부터 고용안정 지원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 중소기업·중견 기업 및 관련 협회 대상 경계선 지능인 인식 제고 사업 실시

### □ 기대 효과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범사회적 변화 견인
- 중소·중견기업에 적성 검사 및 필수 교육을 마친 경계선 지능인을 적재적소에 배치

### □ 실천방안

- 경계선 지능 청년 채용 지원방안 마련

## 7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으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 □ 현황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원으로('23년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연환산 운용수익률은 2% 초반대에 불과하여 수익성 개선이 시급
  - \* 적립금 연간 수익률 : ('20) 2.58% → ('21) 2.00% → ('22) 0.02% → ('23) 5.26%
-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불가

### □ 정책 또는 공약

-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 □ 기대 효과

-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로 벤처펀드 운용 방식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어,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시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과 벤처펀드의 출자자 다변화라는 주요 과제를 동시에 달성 가능

### □ 실천방안

- 퇴직급여법에서 위임한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추가(퇴직급여법 시행령§26①1)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퇴직연금감독규정§9①2)
  - \*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용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 비상장 주식은 제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벤처펀드 출자근거 명시(퇴직급여법 시행령 § 16의4②)

- 중기퇴직연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2년 4월 도입
- '24.3분기 기준 적립금 규모는 7,215억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

-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은 성장에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sup>(1위)</sup>‘금융비용 부담완화’, <sup>(3위)</sup>‘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을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 토로(벤처기업협회, '24.1)
- (조 합) '24년 벤처펀드 결성은 5조 7,571억원으로 전년(6조 8,031억원) 대비 15.1% 감소했으며, 22년 대비로는 절반 가까이 급감
  - \* 연도별 펀드결성(조원): ('20년)6.9 → ('21년)9.5 → ('22년)11.1 → ('23년)6.5 → ('24년)5.8
  - 특히, 그동안 민간 출자 증가를 견인한 개인과 금융기관의 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
    - \* 개인(조원): ('21년)1.4→('24년)0.4(72.1%↓), 금융기관(조원): ('22년)2.4→('24년)1.0(57.3%↓)
  - 고금리 상황에서 벤처펀드에 민간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투자절벽\*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우려
    - \* 민간 출자 급감 → 신규 펀드결성 급감 → 시차를 두고 수년에 걸쳐 벤처투자 급감
- (투 자) 펀드결성 부진 및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더딘 상황
  - '24년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2.9% 증가하였으나, 21년 대비로는 13.6% 감소
    - \* 연도별 신규투자(조원): ('20년)4.3 → ('21년)7.7 → ('22년)6.8 → ('23년)5.4 → ('24년)6.6
  - 최근 추가하락과 투자기업들의 실적개선 지연 등 회수시장의 불확실성으로 ICT서비스/바이오 등 기존 주력업종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 (회 수) 코스닥 지수 부진, 일부업종에 대한 IPO 심사 강화 및 일정 지연, 투자기업 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환경은 악화되는 분위기

벤처투자 감소로 인한 혁신 저하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